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0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2. 3.

발의자 : 이수진(비) · 김병욱 · 김성환
김영진 · 김정호 · 김홍걸
노웅래 · 민형배 · 윤미향
윤준병 · 이동주 · 조오섭
한정애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생산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 (이하 “사용료”라 함)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지 않은 채 「국유재산법」 등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일반원리 및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.

한편 사용료는 시험자료 취득금액에 일정 요율(料率)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되고 있는바, 취득금액이 높은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료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료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어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등 사용료 제도와 관련 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에 일부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.

이에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의 특성을 반영한 사용료 결정 기준 및 회계 처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신설하고, 소상공인 경영업종,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 등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

보다 명확하고 적정한 사용료의 관리·운영 및 사용료 제도와 관련 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19조의2 신설).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사용료)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

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 취득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.

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

2.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가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인 경우

우

3.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④ 사용료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.

- ⑤ 제2항 ·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-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 등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국유재산법」 중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19조의2(사용료)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.</u></p> <p><u>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 취득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</u></p> <p><u>2.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가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인 경우</u></p> <p><u>3.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한 경우</u></p>

는 경우

④ 사용료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.

⑤ 제2항·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⑥ 사용료의 납부기한 등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국유재산법」 중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